

1. 개정이유

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, 육아·질병·입영 등에 의한 휴직을 허용하기 위해 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267호, 2025. 12. 30. 공포, 2026. 2. 21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수련시간 기준, 휴직의 절차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주당 평균 수련시간, 연속 수련시간 규정

법률에서 위임한 전공의의 주당 평균 수련시간, 연속 수련시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(안 제2조).

나. 휴직의 절차 및 기간 등

육아휴직, 질병휴직, 입영휴직 등 휴직 사유별 신청 절차와 휴직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함(안 제3조).

다. 신설조항 반영에 따라 조문 번호 등을 조정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,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.

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으로 한다.

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수련시간) ① 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 본문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”이란 4주의 기간(휴가·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)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말한다.

②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”은 24시간을 말하고, 같은 항 단서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”은 28시간을 말한다.

제3조(휴직의 절차·기간 등)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로 휴직을 하고자 하는 전공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휴직을 신청하여야 한다.

1. 휴직신청서

2. 진단서, 출산 증명서, 입영통지서 등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: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

2.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질병휴직 : 치료에 필요한 기간

3.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입영휴직 : 병역법령에 따른 복무기간

③ 그 밖에 휴직의 절차·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제4조(종전의 제2조)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제1항제9호”를 “법 제9조제1항제9호”로 한다.

제12조(종전의 제10조) 중 “제3조 및 제4조”를 “제5조 및 제6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조(수련시간) ① 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 본문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”이란 4주의 기간(휴가·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)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말한다. ②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”은 24시간을 말하고, 같은 항 단서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”은 28시간을 말한다.
<u><신 설></u>	제3조(휴직의 절차·기간 등)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로 휴직을 하고자 하는 전공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휴직을 신청하여야 한다. 1. <u>휴직신청서</u> 2. <u>진단서, 출산 증명서, 입영통지서 등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</u>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

	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육 아휴직 : 「남녀고용평등과 일 ·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률」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2.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질 병휴직 : 치료에 필요한 기간 3.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입 영휴직 : 병역법령에 따른 복 무기간 ③ 그 밖에 휴직의 절차·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<u>제2조(수련규칙)</u> ① 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 다) 제9조제1항제9호에서 “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~ 11. (생 략) ② (생 략) <u>제3조 ~ 제9조</u> (생 략) <u>제10조(규제의 재검토)</u> 보건복지 부장관은 <u>제3조</u> 및 <u>제4조</u>에 따 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에 대	<u>제4조(수련규칙)</u> ① <u>법 제9조제1 항제9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11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<u>제5조 ~ 제11조</u> (현행 제3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) <u>제12조(규제의 재검토)</u> ----- ----- <u>제5조</u> 및 <u>제6조</u>----- -----

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435